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우대 지원 근거 마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54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우대 지원 근거 마련(안 8조제2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6. 15.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III. 검토의견

1.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우대 지원 근거 마련(안 8조제2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국가는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¹⁾ 에 따 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생활문화시설은 현행법 제2조제5호2)에 따라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임.

현행법 시행령 제2조3)는 생활문화시설을 보다 구체화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4)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5)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현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행법 제7조제1항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함),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⁷⁾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6)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7)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8)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⁹⁾를 통하여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폐산업시설 등 유헴공간 문화재생사업,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¹⁰⁾을 실시하고 있음.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문화지수¹²⁾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0) 2026년 예산 기준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 69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83억 8,000만원, 폐산업시설 등 유헴공간 문화재생사업 136억 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포함 국민문화활동 지원 232억 4,600만원임.

11)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없음.

12)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통하여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를 지표로 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지수로, 수도권(0.292)이 비수도권(-0.118)에 비하여 0.410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수 분석)」, 2025, p.59.

또한, 2025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 문화시설의 36.9%가 분포¹³⁾하고 있으며, 세 부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이 수도권에 비하여 그 개수는 많으나 1개소 당 운영인력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생활문화센터 보유자원 및 운영현황 >

구 분	생활문화센터 수	운영인력 수	1개소 당 평균 운영인력
수도권	59	237	4.02명
수도권 외의 지역	165	440	2.67명

※ 자료 :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서 국가가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입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아울러, 문화인프라와 문화향유 기회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

13) 수도권 1,231개, 수도권 외의 지역 2,106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2025.

역 주민의 인구유출을 막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에 있어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세제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¹⁴⁾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의 입법임.

다만,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¹⁵⁾ 또는 접경지역¹⁶⁾에 해당하여 관련 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¹⁷⁾가 있는 만큼,

14)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6. 9, p.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 8.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련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17)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 경기도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경기도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유사입법례¹⁸⁾를 참조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대 지역에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여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